##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

별 표

## [별표 4]

## 과태료의 부과 기준(제26조 관련)

	근거법령	과태료 금액				
위 반 행 위	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위반	4회 이상 위반	
1. 법 제24조제2항에 따 른 에너지진단을 받지 아니한 에너지다소비사 업자	법 제100조 제1항	1천만원	2천만원	2천만원	2천만원	
2.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위반하여 에너 지사용계획의 제출·협 의 또는 변경 협의를 요청하지 아니한 자	법 제100조 제2항제1호	300만원	500만원	700만원	1천만원	
3. 법 제33조에 따른 개 선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		300만원	500만원	700만원	1천만원	
4. 법 제7조제2항제9호 에 따른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·명령, 그 밖의 필요한 조치에 위반한 자 가. 차량의 사용제한에 관한 명령에 위반한 자 나. 그 밖의 에너지사 용의 제한 또는 금지 에 관한 조정·명령,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에 위반한 자	제3항제1호	10만원 50만원	10만원 100만원	10만원 200만원	10만원 300만원	
5. 법 제9조제1항에 따 른 필요한 조치의 요청 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 부하거나 이행하지 아 니한 공공사업주관자		50만원	100만원	200만원	300만원	
6. 법 제9조제2항에 따 른 관련 자료의 제출요 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사업주관자		50만원	100만원	200만원	300만원	
7. 법 제10조에 따른 이 행여부에 대한 점검 또 는 실태파악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사업주관 자		50만원	100만원	200만원	300만원	

8. 법 제12조제1항에 위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 이 수요관리투자계획 및 시행결과를 제출하 지 아니한 자	법 제100조 제3항제6호	50만원	100만원	200만원	300만원
9. 법 제12조제2항에 위 반하여 수요관리투자계 획을 수정·보완하여 시행하지 아니한 자		50만원	100만원	200만원	300만원
10. 법 제13조제1항 전 단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에너지사 용기자재를 설치 또는 사용하지 아니한 자		50만원	100만원	200만원	300만원
11. 법 제19조제4항에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의 자료를 제출한 자	법 제100조	20만원	50만원	100만원	300만원
12.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 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		20만원	50만원	100만원	300만원
13. 법 제58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 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	법 제100조 제3항제9호	30만원	50만원	100만원	300만원
14. 법 제59조제3항에 따 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 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	법 제100조 제3항제9호	30만원	70만원	150만원	300만원
15. 법 제67조에 위반하 여 에너지관리공단 또 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	법 제100조	300만원	300만원	300만원	300만원
16. 법 제8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동조제3 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	1 1 100그	20만원	50만원	100만원	300만원
17. 법 제89조제1항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 고를 한 자	법 제100조	50만원	100만원	200만원	300만원

비고

- 1. 제1호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1회 위반을 1년 단위로 적용하여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다음 진단주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
- 2. 제2호 내지 제17호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최근 2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.